

2022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 개요

1. 세 입

- 비상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7억 5천 1백만원으로 기정(당초)예산(6억 5천 6백만원) 보다 9천 5백만원(14.4%) 증액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기정	당초
합 계		655,936	655,936	750,568	94,632	94,632	14.4	14.4
세외 수입	경상적	534	534	6,047	5,513	5,513	1,032.4	1,032.4
	임시적	5,858	5,858	91,977	86,119	86,119	1,470.1	1,470.1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649,544	649,544	649,544	0	0	0	0
보전 수입등	보전수입등	0	0	3,000	3,000	3,000	순증	순증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세목	구분	예 산 액						
		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계		6,392	6,392	101,024	94,632	94,632	1,480.5	1,480.5
기타이자수입		534	534	6,047	5,513	5,513	1,032.4	1,032.4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5,858	5,858	91,977	86,119	86,119	1,470.1	1,47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0	0	3,000	3,000	3,000	순증	순증

2. 세 출

- 비상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9억 6천 5백만원으로 기정(당초)예산(29억 9천 8백만원) 보다 1.1%(3천 3백만원) 감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2,997,718	2,997,718	2,965,178	△32,540	△32,540	△1.1	△1.1	
행정관리	소 계	2,997,718	2,997,718	2,965,178	△32,540	△32,540	△1.1	△1.1
	행정운영경비	147,716	147,716	147,716	0	0	0	0
	재무활동	0	0	3,070	3,070	3,070	0	0
	사업비	2,850,002	2,850,002	2,814,392	△35,610	△35,610	△1.2	△1.2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별	2022 예산		2022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193,980	193,980	161,440	△ 32,540	△ 32,540	△1.1	△1.1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79,720	79,720	69,110	△10,610	△10,610	△13.3	△13.3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14,260	114,260	89,260	△25,000	△25,000	△21.9	△21.9
재무활동 (반환금및기타)	0	0	3,070	3,070	3,070	순증	순증

II .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비상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7억 5천 1백만원으로 기정(당초)예산 대비 14.4%(9천 5백만원) 증액된 수준이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기정	추경		
세입	총 계		655,936	750,568	94,632	
	지방세수입		-	-	-	
	세외수입	소 계	6,392	98,024	91,632	
		경상적	534	6,047	5,513	○코로나19로 인한 시비보조금 반환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임시적	5,858	91,977	86,119	○코로나19로 인한 자치구 사업 축소 집행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 증가
	보조금		649,544	649,544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3,000	3,000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도 미실시된 지역민방위대 육성 경진대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551만 3천원)’과,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8,611만 9천원)” 및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중 ‘국고보고금사용 잔액(3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입 과목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세목	구분	예산액						
		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계		6,392	6,392	101,024	94,632	94,632	1,480.5	1,480.5
기타이자수입		534	534	6,047	5,513	5,513	1,032.4	1,032.4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5,858	5,858	91,977	86,119	86,119	1,470.1	1,47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0	0	3,000	3,000	3,000	순증	순증

가.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 비상기획관의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전년도 자치구에 보조한 지방(시비)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의 반환에 따라,

- ‘기타이자수입’은 자치구 등*에서 수행한 보조사업의 종료에 따른 ‘지방보조금’(시비)의 정산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이자 반납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과목으로,

* 자치구 보조사업 및 “예비군 육성지원”(수도방위사령부, ‘21년 전액 집행) 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23 보조금 반환수입	
		223-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등(위탁비 포함)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 시·도,시·군·구에서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등(위탁비 포함)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216 이자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 공금예금이자수입
216-02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3. 공사공단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4. 출자출연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5. 시·군·구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16-03 기타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등(위탁비 포함)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추가경정예산은 9,197만 7천원으로 기정(당초) 예산(585만 8천원) 대비 1,470.1%(8,611만 9천원)를,

<2021년도 시비보조금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707,329	615,352	91,977
1	민방위교육운영비	313,337	221,505	91,832
2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6,625	16,621	4
3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14,130	14,080	50
4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363,237	363,146	91

- ‘기타이자수입’ 추가경정예산은 604만 7천원으로 기정(당초)예산(53만 4천원) 대비 1,032.4%(551만 3천원)를 증액한 수준임.

<2021년도 지방보조금(시비)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
	계	707,329	615,352	91,977	6,047
1	민방위교육운영비	313,337	221,505	91,832	3,810
2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6,625	16,621	4	150
3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14,130	14,080	50	8
4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363,237	363,146	91	2,079

○ 비상기획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자치구 등에서 수행하는 시비(市費) 보조사업의 축소 운영으로 보조금 반환금과 이에 대한 이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이를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다만, 비상기획관 시비보조사업 예산의 결산 추이를 보면, 매년 세입예산액과 결산액의 과다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의회의 지적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보조금 정산으로 발생한 반환금 수입 결산전망액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조정하려는 것은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지방재정법」 제34조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최근5년간 시·도비반환금 수입 예산/결산률 현황〉 (단위 : 천원)

2019		2020		2021		2022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17,332	10,365	13,264	4,977	6,3534	134,443	5,858	1	91,977
결산률 59.8%		37.5%		1,276.6%		(전망) 1,570.1%		

〈최근5년간 기타이자수입 예산/결산률 현황〉 (단위 : 천원)

2019		2020		2021		2022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472	457	499	365	563	1,898	534	234	6,047
결산률 96.8%		73.1%		337.1%		(전망) 1,132.4%		

- 다만, 본 추가경정예산 세입 증액편성률(1,480.5%)이 과다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 보조사업 진행 정도에 대한 분석없이 부실하게 세수추계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 당초 본예산 편성부터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같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세입), 국고보조금 반환금(세출)

- 지방재정법(제34조)에서는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중요한 정책 사업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개별부서 추계 등을 취합하여 예산부서에서 총괄 관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비상기획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된 ‘지역민방위대 육성 경진대회’ 사업의 전년도 국고보조금 전액을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세입예산(‘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세출예산(이자 포함)에 반영하여 반환하려는 것임.

※ 세입(‘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백만원, 세출(‘국고보조금 반환금’): 3,069,330원

〈국고보조금 반환 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및 내역	교부액 (A)	집행액 (B)	불용액 (A-B)	집행율(%)	반환액	비고
사무관리비 (지역민방위대 육성 권역별 경진대회)	3,000,000	0	3,000,000	0	3,069,330	·원금 : 3,000,000원 ·이자 : 69,330원

- 다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액을 전망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보전수입등내부거래-보전수입 등-전년도 이월금)’으로 당초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항 목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2 전년도 이월금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 <u>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u> ※ 시·군·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시·도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

- ‘국고보조금 반환금(예비비및기타-반환금기타)’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9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 정 (통계목 포함)	비고
800	예비비및기타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비상기획관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당초 본예산에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본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를 편성하려는 것으로,

-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의 경우는 국고보조사업의 정확한 반납액을 예측할 수 없어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점은 있겠으나,
-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액을 전망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세입) 추정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세목	예산액						
	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0	0	3,000	3,000	3,000	순증	순증

<‘국고보조금 반환금’(세출) 추정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별	2022 예산		2022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재무활동 (반환금및기타)	0	0	3,070	3,070	3,070	순증	순증

2. 세출예산

- 비상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9억 6천 5백만원으로 기정(당초)예산(29억 9천 8백만원) 대비 3천 3백만원(1.1%) 감액된 수준임.
- 본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은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1천 61만원)와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업의 ‘자치단체 경장보조금’(2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307만원)에 대한 반환금을 신규(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세입추경 부분에서 함께 다루었음.

〈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설명 자료〉

(단위: 천원)

사업명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감액률)	감액 내용 및 사유
총 계	193,980	161,440	△32,540 (△1.1%)	코로나19로 행사 축소 등에 따른 예산차액 감소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79,720	69,110	△10,610 (△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5,270) • 22년도 화랑훈련(△5,340) - 감추경액 : △10,610천원 - 사유 : 코로나19로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미실시 및 22년 화랑훈련 연기에 따른 감액조정
민방위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14,260	89,260	△25,000 (△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 감추경액 : △25,000천원 - 사유 : 코로나19로 행안부 지침에 의거, 민방위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어 실습교보재 예산 감액조정
채무활동 (반환금및기타)	0	3,070	3,070 (순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 증추경액 : 3,070천원 - 사유 : 코로나19로 2021년 전국 민방위대 경진대회 및 지자체별 경진대회 전체 취소 결정(행정안전부)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원금 3,000,000원, 이자 69,330원)

가.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사무관리비) 감액

○ 본 사업은 통합방위사태*시 지역 내 국가방위요소**의 유기적인 통합으로 효과적인 통합방위 작전 수행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와 안보정책자문단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 사업내용: 통합방위회의(1회), 통합방위협의회(4회) 개최, 안보정책자문회의(정기 월 1회) 개최, 국외업무 출장여비 등

* 통합방위: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 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통합방위법」 제2조 제3호)

* 통합방위사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갑·을·병종사태), (「통합방위법」 제2조 제3호)

** 국가방위요소: 국군, 경찰청·해양경찰청, 자치경찰기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예비군, 민방위대,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통합방위법」 제2조 제2호)

※ (참고) 민방위사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국가적 재난사태(민방위기본법 제2조제1호)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미실시와 2022년 화랑훈련(적년 개최)의 다음연도 연기 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당초(기정)예산(5,672만원)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무관리비'(1천 61만원)를 전액 감액함으로써, 사업예산(7,972만원)의 13.3%(1천 61만원)를 감액편성 하려는 것임.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별	2022 예산		2022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79,720	79,720	69,110	△10,610	△10,610	△13.3	△13.3

〈통계목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69,110	79,720	△10,610	
사무관리비	45,660	56,270	△10,610	○ 코로나19에 따른 미사용 예산금액(10,610천원) -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미실시(5,270천원) - '22년 화랑훈련 미실시(5,340천원)
국외업무여비	10,000	1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450	13,450	-	

〈'사무관리비' 산출내역 및 증감내역·사유〉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목록	기정예산 (천원)	미사용 예산(천원)	사유	
합 계		56,270	△10,610		
통합방위협 의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소 계	30,630	△5,270	* 코로나19로 통합방위협의회 1분기 미실시로 1회분 감추경	
	유인물/현수막 등	8,280	△2,070		
	회의장임차료/주차 료	9,200	△2,300		
	전시장비 임차료	3,600	△900		
	유공 표창장 인쇄	550	-		
	영상자료 제작 등	9,000	-		
	소 계	20,300	-		
	안보정책 자문회의	참 석 수 당	17,600	-	
		사 전 자 료 검 토	1,200	-	
		위원회의 회의운영	1,500	-	
	'22년 화랑훈련 실시	소 계	5,340	△5,340	* 코로나19로 화랑훈련 '23년으로 연기, '22년 화랑훈련 미실시 예산 감추경
		상 황 실 물 품 구 매	1,000	△1,000	
		장 비 임 대	1,700	△1,700	
		근 무 자 급 량 비	2,640	△2,640	

○ 다만, 본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을 볼 때 '통합방위협의회'의 '사무관리비' 일부 감액 외에 사업의 축소 운영에 따른 '안보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등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코로나 감염병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국외업무여비(1천만원)' 등에 대한 추가 감액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6월 말
예산액	121,480	93,480	73,480	70,240	79,720
집행액	119,262	84,748	57,804	36,173	13,850
집행률	98.2%	90.7%	78.7%	51.5%	17.4%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업 향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69,110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	.01~2022.12	550	표창장 제작
1/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2022.02~2022.02	0	행사장 임차료, 영상자료, 인쇄비, 간담회 등
2/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2022.05~2022.05	6,270	행사장 임차료, 인쇄비, 간담회 등
3/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2022.08~2022.08	12,270	행사장 임차료, 인쇄비, 간담회 등
4/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2022.11~2022.11	6,270	행사장 임차료, 인쇄비, 간담회 등
해외 우수사례 통합방위 시찰	2022.01~2022.12	10,000	통합방위 해외우수사례 시찰
안보정책자문단 운영	2022.01~2022.12	20,300	회의 개최 등
화랑훈련 추진	2022.01~2022.12	0	물품구매, 장비임대, 훈련간 급식비 등
통합방위 시책업무추진	2022.01~2022.12	13,450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업무추진비

나.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감액

- 본 사업은 민방위 교육교재 등 제작과 민방위대원 교육 강사 선발 및 연수, 민방위통지서 전자고지 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이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행정안전부 민방위과-273(22.1.28.))되어, 민방위 실습여건 개선을 위한 실습교보재 구입비 자치구 지원 예산(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천 5백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사업예산(1억 1,476만원)의 21.9%(2천 5백만원)를 감액편성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7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8 자치단체등이전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자본 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금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별	2022 예산		2022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14,260	114,260	89,260	△25,000	△25,000	△21.9	△21.9

〈통계목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89,260	(x) 114,260	(x) △25,000
사무관리비	(x) 47,760	(x) 47,760	(x) 0
공공운영비	(x) 31,000	(x) 31,000	(x)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8,100	(x) 8,100	(x) 0
행사실비지원금	(x) 2,400	(x) 2,400	(x)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0	(x) 25,000	(x) △25,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산출내역 및 증감내역 및사유〉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감	산출내역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0	25,000	△25,000	○ 집합교육 미운영에 따른 실습교보재 구매예산 미교부 - 민방위 실습여건 개선(25,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2018	2019	2020	2021	2022.6월 말
예산액	50,000	50,000	30,000	0	25,000
집행액	50,000	50,000	30,000	0	0
집행률	100%	100%	100%	0%	0%
				기정예산 25,000 추경예산 0 (코로나19)	제2회 추경시 △25,000 예정 (코로나19)

다. 의회의 의결 대상 안건의 제출기한 규정 준수 촉구

○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련법령(「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의규칙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연 제출(회기시작 2일전)함에 따라 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심의에 상당한 시간적 제약을 초래하였는바, 이는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본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일 : 2022.7.13., 본 회기(제311회) 시작일 : 2022.7.15.

※ 예산안 경우의 경우 의회의 충분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시장은 예산안 제출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22조의2(의안 발의) ② 의안 발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최석훈